

소비자를 위한 정책간담회

일회용컵 보증금제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2022. 10. 24(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산림비전센터 7층 열림홀

사회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참석

고장수 전국카페시장협동조합 이사장

김범철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명예교수

서구원 한양사이버대 광고미디어학과 교수

안승호 송실대 경영학부 교수

주최 **컨슈머워치**



일회용컵 보증금제 무엇이 문제인가?

- 일 시: 2022년 10월 24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 소: 산림비전센터 열림홀
- 주 최: 컨슈머워치

- 사회 :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 참석 : 서구원 한양사이버대학교 광고미디어학과 교수
김범철 강원대학교 환경융합학부 명예교수
안승호 송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자원재활용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에 대한 컨슈머워치 의견

최근 사용된 1회용 컵의 수거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재도입하려다 사업주들의 반대로 12월까지 연기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곧 다시 시범지역(세종,제주)으로 축소하였지만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여 사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컨슈머워치는 소비자 입장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이 가져올 파급력과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 제안해야 할 점을 논의하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해당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자원재활용법)

- 제15조의2(비용기·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 소비자 정책 단체 의견

: 소비자 불편 강요하면서도, 환경보호 효과성 입증되지 못한 자원순환보증금제 시행령 제고 및 무기한 시행 연기 촉구

1. 환경보호 효과 적고, 소비자 불편만 초래

○ 일회용 컵을 대신해 텀블러 사용과 다회용 컵 사용을 독려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환경 친화적인지에 대한 과학적 실험부재 및 공감대 형성 부족

- 한 연구에 따르면 도자기 머그컵 210회 이상, 스테인리스 텀블러 사용이 220회 이상 사용하여야 플라스틱 미사용의 효과가 있음.

(출처: 2020. CIRAIQ_RapportACVtassesetgobelets_public.)

- 실제 소비자들의 월평균 텀블러 사용 횟수는 6.5회, 텀블러 1개당 평균 45.8회 재사용하는 데 그침. (출처:2021. 여성신문 설문조사)
- 텀블러와 다회용 컵이 더 친환경적인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이 사용을 독려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 초래.

2. 위생 문제 간과

○ 소비자들이 1회용 컵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위생 문제인데 이를 고려하지 못 함

- 1회용 컵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개인의 위생이 걱정돼서임.
(출처: 2020. 한국행정연구원, 1회용품 관련 규제실태조사_플라스틱컵을 대상으로)
- 코로나19 이후 개인위생에 대한 염려 불안이 크고, 이를 유의하는 정책 필요.

○ 매장 내 쓰레기 보관 위생 문제

- 매장 내 수거된 컵 보관에 따른 악취 발생.
- 매장에서는 외부에서 버려진 일회용 컵을 가져와도 이를 받아야 함. 외부 쓰레기를 수거하여 반환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다수 발생 가능.

○ 소비자들 비용 내고도, 위생 보장 받지 못함

- 자원순환보증금제의 시행은 비용을 부담하고도 위생을 보장받지 못하는 피해로 이어짐.
- 일회용 컵 반환으로 연계 되는 환경보호의 유익이 국민의 위생과 불편을 지불해야 할 만큼 크지 않음.

3. 낮은 참여율로 실패한 제도의 반복

○ 법적 규제로 회수율만 높이는 것만 고려하고, 소비자 불편 문제는 개선 되지 않음.

- 2002년 시행했다 5년 만에 폐지되었던 주된 이유가 낮은 회수율이었음에도 개선사항 없이 재시행 하는 것에 대한 설득력 부족.

-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폐지된 주된 이유가 일회용컵 회수율이 37% 수준의 낮은 회수율이었음.

- 소비자들도 일회용컵 사용을 선호함. 조사 결과, 음료를 구입할 때 68.7%가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반면,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은 9.2%에 그쳤음.

(출처: 2020. 한국행정연구원, 1회용품 관련 규제실태조사_플라스틱컵을 대상으로)

○ 소비자가 컵을 반환하는 과정이 불편함으로 실효성 낮음

- 소비자가 일회용 컵을 매장 밖으로 가져가는 것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함인데, 다시 매장을 방문하여 반환하는 것은 불편함을 초래함.

4. 정부의 미 반환 보증금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 미 반환 보증금에 대한 소비자 손해 및 구매 비용 증가

- 자원순환보증금이라고 하나, 결국 회수되지 않는 보증금은 소비자에게 비용에 불과함.

- 순환보증금이 비용을 지불한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사용처로 이전되는 것도 소비자 권익을 침해함.

- 1회용 플라스틱 컵 보증금 지불을 거부한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 보증금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많음.

(출처: 2020. 한국행정연구원, 1회용품 관련 규제실태조사_플라스틱컵을 대상으로)

- 과거 보증금제 시행 때 일부 기업은 미 반환 보증금을 홍보비로 사용해 비난받은 바 있음. 보증금은 보증금을 지불한 소비자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함.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토론문]

한양사이버대학교 광고미디어학과
서구원

1. 해당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자원재활용법)
- 제15조의2(빈용기·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2. 상황

- 환경부에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커피전문점 등에서 6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12월 2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
- 제도의 목적 : 1회용컵의 사용억제, 회수율 제고 및 재활용 촉진 등
- 유예 원인 : 생산자 부담 완화,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준비 부족

3. 법률적 배경

(1) 2002년 자율 협약

- 내용 : 환경부에서 2002년 패스트푸드 7개 업체, 커피전문점 24개 업체 등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협약을 맺고 ‘1회용컵 보증제’를 실시하였으나 2008년 3월 폐지
- 제도 : 보증금 50~100원, 해당 컵은 음료를 판매한 동일 브랜드 매장에 반납하면 환수
- 문제점 : 자발적 협약, 컵 회수율 30% 수준, 소비자의 미회수 보증금이 업체 수익으로 전환

(2) 2020년 자원재활용법 개정

- 환경 : 커피전문점의 증가, 소비자의 아이스 음료 선호, 음료 테이크아웃 등으로 1회용컵 사용 증가
- 2020년 자원재활용법 개정
- 주요 내용 : 컵보증금제 및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법적 의무는 생산자로 규정, 수거에서 재활용 과정에 대해 생산자, 소비자, 지자체, 정부가 역할 분담, 매장 수 100개 이상을 가진 가맹본부(약 3만 8천여 개소) 대상

4. 기존 법률 시행 과정의 시사점 요약

- 2002년 자율협약에 의해 시행된 ‘1회용컵 보증제’의 결과 시민의 불편함과 의식부족으로 실패, 소비자의 미회수 보증금이 업체 수익으로 전환
- 2020년 개정된 법률의 유예 원인(생산자 부담 완화,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준비 부족)은 해결되었는가?

5. 의견

(1) 법률의 역할

- 법률은 사회적 위험성이 있고 시급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시민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실행할 수 있고, 징벌적 처벌이 아닌 예방적 목적으로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
-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환경을 위해 법률로 강제할 만큼 사회적으로 위험하고, 시급한 사안인지 검토 과정을 거쳤으며, 사회적 합의 과정을 충분히 거쳤는가? :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합의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자발적 참여와 관련

(2) 관리 준비 및 사회적 비용

- 플라스틱 컵(표준 규격 제조), 종이컵(안쪽코팅), 바코드 부착, 위·변조 방지를 위한 한국조폐공사 발행 스티커 부착, 반환된 컵의 수거와 관리(보관장소 인력 문제), 300원 보증금 관리, 권역별 수거업체, 역(逆)회수체계 담당 전문 재활용업체 지정 등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고려
- 법률 시행 결과가 환경보호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 가능한가?
- 법률 시행을 위한 관리 과정이 충분히 준비되었는지(절차적 정당성)
- 소비자가 실행하기 불편해서 300원을 포기할 때 법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음료가격 인상과 세금의 개념으로 변질가능성이 있음

(3) 시민과 기업의 의식과 자발적 활동이 중요

-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한 자발적 참여가 중요 : 이는 시간이 필요하며 정부는 시민의식이 성숙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상적
- 기업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을 자발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음
- 정책, 입법 과정에 시민의 참여 : 여론이란 사실이 아닌 다수의 의견이며,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낮은 결과에 대한 과도한 해석 주의
- 소비자에 대한 홍보와 교육 부족 : 언론, NGO 등과 사회적 캠페인으로 진행하는 것도 검토

| 토론문 |

강원대학교 환경융합학부
김범철

일회용 컵과 텀블러, 어느 쪽이 친환경적인가?

김범철

요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일회용 종이컵 대신 재사용이 가능한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자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면 일회용 컵과 재사용 컵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친환경적일까? 이 물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쓰레기가 생기지 않는 재사용 컵이 친환경적이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이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전제 조건이 다양하여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물건이나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영향 뿐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부터 운반, 처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를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라 한다. 대개 소요되는 에너지를 모두 계산하여 비교하는 방식인데 환경영향을 에너지로 환산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유일한 평가 잣대이다. 예를 들어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이 발생하면 이를 대체 처리하는데 드는 에너지를 필요 에너지로 계상하는 것이다.

에너지는 비용을 지불해야 살 수 있는 재화이므로 가격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즉, 가격이 비싼 물건은 제조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요했다는 뜻이다. 이상적인 환경경제학이 작동하는 사회에서는 소비한 에너지와 환경피해가 제품의 가격에 적절히 반영된다. 그러나 간혹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올바르게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후진국에서는 수질오염이 발생하더라도 처리를 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으며 이 때 폐수처리의 소요 에너지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값이 싸진다. 또는 환경피해의 당사자가 명확치 않아 계상되지 않기도 한다. 예를 들어 풍력발전기 날개에 부딪혀 죽는 새가 미국에서 연간 약 1백만 마리로 추산되는데 새의 목숨 값은 전기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상적인 경우에는 가격에 소요에너지와 환경피해 복구를 위한 에너지가 반영된다고 보고 가격이 싼 편을 택하는 것이 친환경적이다. 즉, 20원짜리

종이컵 500개와 1만원짜리 텀블러는 유사한 에너지가 소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종이컵과 텀블러를 비교하는 연구는 1994년 캐나다의 Hocking 이 발표한 논문에서 촉발되어 많은 후속 연구와 논쟁이 이어졌다. Hocking 은 종이컵과 다회용 컵의 제조과정, 운반, 판매, 폐기물 처리 등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비교하였다. 물건의 제조를 위해서는 원료가 되는 광물의 채굴과정부터 에너지가 소요된다. 도자기를 구우려면 연료도 필요하고, 운반하는 데에도 무게에 따라 더 많은 에너지가 소요된다. 사용 후 세척을 한다면 또 에너지가 소요된다. 식기세척기를 사용하는 경우 물과 전기를 사용하는데 수도물을 만드는 과정은 모두 전기를 사용하는 과정이다. 하수를 처리하는 데에는 정수비용보다 더 많은 전기가 소비된다.

종이컵과 재 사용컵을 비교한 결과 머그컵 사용이 종이컵과 같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점은 약 500 - 1,000 회 사용한 이후이다. 폐기물의 잔존기간에 따라 환경피해를 계상한다면 그 기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머그컵의 매립쓰레기가 영향을 주는 기간을 100년으로 계산하는지 1000년으로 계산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여기에서는 매립쓰레기의 장기간 피해를 어느 정도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이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

컵을 세척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 즉 사람의 시간도 에너지로 환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우리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 빨리 이동하려고 택시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기도 하며 시간을 위해 에너지를 소비한다. 그러므로 컵세척에 필요한 인력을 에너지로 환산할 수도 있다.

만일 일회용 컵을 특별히 모아서 별도로 처리한다면 여기에는 수집과 운반을 위한 에너지가 추가된다. 자동차는 대기오염을 증가시킬 것이며 인건비는 간접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다. 폐기물 양을 줄이려다 대기오염을 더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정밀하게 계산해야 한다. 재사용 텀블러로 일회용 컵을 대체하는 경우에도 텀블러를 몇 번이나 사용하는지 정확히 조사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만일 재사용 컵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면 개당 사용횟수는 더욱 줄어들어 에너지 사용량이 일회용컵보다 더 클 수 밖에 없다.

| 토론문 |

송실대학교 경영학부
안승호

환경보호를 위한 소비자의 의도와 행동

송실대학교 경영학부 안승호 교수

좋은 환경은 무엇인가? 객관적 지표 예를 들어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지 않은 바다와 하천, 미세 먼지, CO2 등 환경오염 물질이 적은 대기, 폭우, 극한 등이 덜한 덜 위협적인 날씨 등을 들어 좋은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환경은 이를 사람들이 이해하고 해석한 환경이며 이에 대한 심리적 반응이다. 대부분의 정책적 관심이 객관적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바람에 주관적으로 해석된 환경 개선에는 충분한 관심을 주지 못하고 있다.

모두가 인지하고 있듯이 환경보호의 필요성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경부와 환경부담금이 필요하듯이 모든 관련 주체들이 필요한 실질적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즉 의도와 행동에는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제까지 간과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 번째, 환경보호에 대한 선한 의도와 행동 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 의도와 행동간의 차이를 제거하는 것이 정책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에 관한 것이다.

행동 수정만을 노린다면 매우 강압적인 정책이 더욱 좋아 보인다. 플라스틱 봉투 혹은 컵에 하나에 1000원을 부가하거나, 아예 생산을 중지시키거나, Colorful한 포장을 금지시키거나, 20여종으로 나뉜 분리수거 체제를 가동하거나 분리수거 위반에 100만원의 벌금을 부가하거나 등등 아주 좋은(?) 방법들이 많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독재국가가 아닌 이상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행동 수정의 강도는 이에 걸 맞는 국민의 가치관 형성 정도에 맞추어져야 함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듯하다. 즉 국민 스스로가 환경보호라는 가치에 전념하여 이러한 정책 강화가 필요 없는 상황으로 유도하는 것이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혹자는 이러한 일이 가능할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좋은 환경입니다. 여기서 키워드

는 행복입니다.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심리학자들은 prosocial behavior 즉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의도적인 자발적 행동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따라서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 자제는 본인과 다른 사람을 위한 활동으로 인식되었을 때 환경보호 활동은 행복을 증진시키는 활동이 될 것입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활동이 환경보호 활동인데 누군들 회피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주지할 사실은 자발적 의지의 필요성입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기반하여 행동한다면 자발적 의지의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요구하는 벌금, 부담금과 같은 처벌은 자발적 의지의 발현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것은 심리학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들도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는 오히려 반발을 불러일으켜 궁극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흔히들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지만 참여를 독려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책이나 지원이 없다. 예를 들어 미국과 독일에서는 공병 보증금 반환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이 폐휴지를 수집하듯 공병을 수집하게 함으로써 환경보호는 물론 이웃을 돕는 취지에도 부합되어 prosocial behavior의 장점을 그대로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일회용 컵 혹은 플라스틱 봉투 보증금제도 운영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축적된 보증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단지 사업자의 수익으로 남겨질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를 위해 어떤 기여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민간의 창의적 해결을 방해하는 규제적 접근은 자제되어야 한다. 대신 모범이 될 수 있는 사업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토론문 |

전국까페사장협동조합
고장수

얼마전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행정기관으로서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법을 바꾸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고 해명하며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또한 ‘탁상행정’ 아니냐는 물음에 ‘탁상행정이 맞다고’ 대답하고,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불합리한 제도가 아니냐는 물음에 맞다고 답하는 환경부 장관의 답변을 들으면서 환경부가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제도의 설계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설계하고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배제한 채, 2년이라는 시간동안 프랜차이즈 본사와 200여 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브랜드의 본사와 소통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도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자원순환보증금센터를 통한 스티커라벨 구입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거세게 저항하는 카페사장님들의 외침에 그제서야 부랴 부랴 카페사장님들과의 협의 테이블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로

자원재활용법에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 포장지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1회용컵 보증금제도’만 유일하게 소비자가 비용의 책임을 가져간다는 것 입니다.

이는 ‘1회용컵 보증금’제도로 소비자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연간 4조 5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입니다.

세계적 이슈, 국가의 정책을 개인이 지불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조치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지난 3월 한 여론조사에서는 1회용 컵 보증금제도에 대해 국민의 인지도 등을 조사한 바 있다. 해당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63%가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세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응답은 10%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의 시행이 우선이 아니라 캠페인 및 홍보가 우선시 되어야한다고 생각되며, 충분한 캠페인과 홍보가 선행된 후 시행해야 맞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

카페라는 공간은 음료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공간입니다.

그만큼 첫 번째도 위생이고, 두 번째도 위생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카페사장님들은 1년에 한번씩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으며, 지자체 및 식약처의 위생점검도 불시에 받고 있습니다.

카페사장님들이 우려하는건 '1회용컵'을 반납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교차오염이며, 이는 국민건강에 치명적이며, 건강보험료 같은 사회적·경제적 부담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시행함으로 들어가는 비용중 상당부분을 자원순환보증금센터에 적립되어 있는 빈병보증금 552억원을 우선 사용하여,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빈병의 미반환 보증금을 뺀것을 우선 '1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에 사용하고, 추후 '1회용컵 보증금'의 미반환 보증금으로 다시 채워놓는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증금이라는건 소비자가 구매를 하면서 지불하고, 추후 언젠가 됐던지 찾아가도록 해야하는 소비자의 돈입니다.

이 보증금의 설계는 '0'으로 맞춰 설계를 해야하는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입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 보증금이 현재의 빈병보증금 이상으로 쌓을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수익사업입니까?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되는 소비자의 돈이 지불되고, 더더욱 찾아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 소비자물가 상승 및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짊어지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